

# 2022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 전용 보고

##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

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
-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예산전용 내역 : 총 1건 58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	전용액		전용후 예산액
부서명	정책	단위	세부	통계목	예산현액	증	감	
토지관리과	도시계획 관련 인프라 구축	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	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	자치단체 경상보조금	58,000	-	58,000	-
				사무관리비 (201-01)	-	58,000	-	58,000

## 전용사유

-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지원체계 구축 사업 직접수행
  - GNSS 위성수신기를 활용한 도로 구간 운행 및 경로데이터의 정확도 검증과 도로 경산구간별·난이도별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,
  - 교부결정된 국고보조금의 세출예산 간주처리시 예산과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처리된 바, 직접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.